

인권센터 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2.02.18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이라 한다) 인권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기능)

- ①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센터의 기본사업·운영계획 및 운영 방안
 2. 인권침해 등 성희롱·성폭력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·심의·의결
 3. 인권침해 등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·의결
 4. 본교 구성원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
 5. 본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6. 기타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.
- ②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③ 인권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,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학생 2명과 직원 2명을 포함하여 교내·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센터 전문상담사 또는 직원으로 한다.

제4조 (임기)

- 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제척)

-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 등(이하“위원 등”이라 한다)이 인권침해 등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제척된다.
 1.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된 때
 2.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인 때

3. 당사자의 법정대리인, 후견감독인인 때
 4. 당사자가 소속된 부서 또는 학과(계열)의 교원, 직원 및 학생인 경우
- ② 전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제척된 경우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인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.

제7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2.02.18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